

제15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

정부간행물의 수집·정리 및 이용

신 현 덕
문화교류사 대표

1. 정부간행물의 定義

Government Publications 또는 Public Documents 등으로 불려지는 정부간행물은 국가정부기관 또는 국제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간되는 공적인 간행물 (Official Publications)을 總稱하는 用語로서 개인이나 私的인 단체에 의하여 발간되는 일반 도서 및 정기간행물과 구별하기 위하여 흔히 사용되고 있다.

현재 지구위에는 150여개의 독립국가들과 UN을 비롯하여 FAO, WHO, Unesco 등의 UN전문기관과 OECD, OAS, EC 등 지역적인 국제정부기관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지구위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 영토안에 있는 국민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立法 및 行政機能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事項을 文書로 작성하여 보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周知해야 할 사항에 관한 것은 刊行物의 형태로 配布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統治機構는 국가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입헌군주국가는 물론, 공산국가에 있어서도 통치기구가 대체로 입법·행정·司法등에 속하는 3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文書 및 資料 등을 수없이 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간행물의 發刊 및 配布가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미국에 있어서는 연간 발간되는 정부간행물의 숫자가 수만종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간행물들을 국민이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부간행물 기탁도서관(Depository Library)제도를 채택하여 전국에 散在하고 있는 기탁도서관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국가정부기관이 간행하고 있는 정부간행물의 종류를 대별해 보면: (1) Government Gazette에 속하는 일종의 정부공보의 형태로 중요한 통치상의 정책수립·인사이드·변경사항 등에 관한 것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며, (2)법률의 제정, 국회의사록, 청문서 등을 포함하

는 입법부의 간행물과, (3)판례 등을 수록한 판례집 등 사법부에 의한 간행물 그리고 (4)국가 통치의 主役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에 의한 방대한 수의 간행물이 있는데, 행정부에 의한 간행물은 특히 정치·경제·군사·보건·사회·교육·의교·농업·과학기술 등 다방면에 걸쳐서 귀중한 연구자료가 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부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의 樣式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중에 하나를 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 (1) 행정백서, (2)통계보고서, (3)위원회의 보고서,
- (4)조사 및 연구보고서, (5)법안 및 결의안, (6)청문서, (7)공보 및 의사록, (8)법률·법규 또는 법전
- (9)판결 및 의견, (10)규칙 및 안내서, (11)인명록 및 등기, (12)서지 및 목록, (13)일반적 또는 상세한 정보, (14)정기간행물, (15)紙上발표, (16)지도 및 도표, (17)필름 및 기타 觀覺의인 자료.

국가정부기관들에 못지 않게 상당수의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특히 2차대전 후에 그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UN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정부기관들이다.

UN은 세계의 130여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조직체이며, 정치 및 군사적인 문제에 관한 것은 물론, 경제·사회·마약·과학기술·문화 등 多方面에 걸친 국제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잡한 조직과 기구를 가지고 있는 UN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문서 및 자료들을 다수 작성하여 비치할 뿐만 아니라, 비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일반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간행물로 발간하여 각국가에 배포하고 있다. UN도 세계각지에 散在하고 있는 UN 간행물의 기탁도서관에 대해서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려대학 교도서관이 UN간행물의 유일한 기탁도서관이다.

보건·원자력·기상·교육·식량문제·무역 및 관세 등에 관한 특수문제에 대한 것은 WHO, IAEA, WMO, Unesco, FAO, UNCTAD, GATT 등의 UN전문기관이 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수분야와 관련되는 자료 및 간행물을 다수 발간하고 있으며, OECD, EC 또는 OAS 등의 지역적인 국제정부기구도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간행물을 출간·배포하고 있는데, 상기한 국제정부기관의 간행물도 국가정부기관의 간행물 못지 않게 다방면에 걸쳐서 귀중한 연구자료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간행물이라 하는 경우, 국가의 중앙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간되는 간행물에만 국한시켜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국가의 지방정부기관 및 국가의 보조를 받는 반관반민 기관은 물론 국제정부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까지 포함하여 정부간행물이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로 정의하는 것이 특수한 성격을 가지는 이러한 자료의 수집·정리 및 이용에 관한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므로 以下 정부간행물이라는 용어를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II. 정부간행물의 종류, 주요목록 및 색인

정부간행물을 국가의 중앙정부기관의 간행물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지방정부기관 및 국제정부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까지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각양각색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간되는 간행물의 양이 년간 수십만중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다. 정부간행물도 그 간행물의 외형에만 치중해서 살펴 볼 때에는 pamphlet나 loose-leaf의 형태로 발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도서 및 정기간행물과 엄격히 구별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本論文에서는 지방정부기관의 간행물에 대한 것은 국가정부기관 및 국제정부기관의 간행물에 비하여 중요성이 적음으로 편의상 생략한다.

미국의 정부간행물 및 UN간행물은 각각 국가정부기관 및 국제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간되는 여러가지 종류의 간행물의 종류 및 간행양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선 양자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도움이 된다.

가) 국가정부기관의 간행물

미국에 있어서는 정부간행물이 연방정부의 인쇄소인 GPO (Government Printing Office)에 의하여 인쇄되며, 정부간행물의 인쇄 및 배포 등에 관한 관리문제를 특별히 책임지고 있는 Superintendent of Documents의 권한 내에서 정부간행물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기탁도서관에 무료로 배포되며, 정부간행물의 일반에 대

한 판매도 행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같이 정부간행물에 대한 관리를 연방정부기관에 의하여 철저히 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도 상당수의 간행물이 GPO에 의하여 인쇄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Superintendent of Documents에 의하여 기탁도서관에 무료로 배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간행물은 소위 Non-Depository Item으로서 그 출처를 확인하는데도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탁도서관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이러한 간행물을 무료로 보내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기탁도서관 중에 특히 지역적인 기탁도서관(Regional Depositories)은 GPO로 부터 무료로 배포받고 있는 정부간행물을 임의로 폐기처분할 수 없으며, 최소한도 다음과 같은 간행물은 언제든지 이용자들이 자유로 사용할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비치해둘 의무를 지고 있다.

- (1) Bibliography of Agriculture, (2) Census of Population, (3) Statistical Abstracts, (4) Patent Office Gazette, (5) U.S. Government Research Reports, (6) Education Bulletins, (7) Index Medicus, (8) Monthly Catalog of U.S. Government Publications, (9) Federal Register, (1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1) U.S. Code, (12) U.S. Reports, (13) Geological Survey Bulletins, (14) Bureau of Labor Statistics, (15) NASA Reports, (16) Nuclear Science Abstracts, (17) Congressional Records, 및 (18) Digest of Public Bills.

이러한 간행물들은 농업·국세조사·각종통계·특허·과학기술·교육·의학 및 약학·정부간행물목록·판보·법률 및 법규·대법원판례·지질조사·노동관계통계·우주 및 원자력연구·국회의사록 및 법안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각급 정부기관의 정책결정 및 활동사항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로서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고 있다.

미국은 정부간행물에 대한 관리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서, 매월 GPO에 의하여 간행되고 있는 Monthly Catalog of U.S. Government Publications는 GPO에 의하여 발간되는 정부간행물은 물론, GPO가 간행하지 않는 소위 Non-Depository Item에 관한 것도 정부기관별로 열거하고 있으며, Superintendent of Documents Number가 표시되어 있는데, 후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원하는 도서관에 공급해 주기위하여 준비해 놓은 Readex microprint edition의 형태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거의 완전

에 가깝다고 볼수 있는 Monthly Catalog도 미국의 정부간행물을 전부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에 있어서는 상당수의 간행물이 이 목록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Monthly Catalog 이외에도 각부처별 또는 특수한 간행물 및 자료에 대한 특별목록 또는 색인이 주기적으로 간행되어 Monthly Catalog의 미비점을 보충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1) U.S. Government Research Reports에 대한 author, title, subject, institution 및 accession number 등에 의한 색인, (2)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대한 classified subject index, 그리고 (3) Congressional hearings에 관한 author, subject, bill number, document 또는 paper number 등에 의한 색인은 복잡한 내용을 갖는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고도로 발달된 색인으로서 他國에서는 이와 유사한 실 예를 거의 찾아 보기 힘들다. 이러한 특별색인의 특색은 정부간행물을 단순히 열거하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간행물의 내용까지 분석·검토하여 特殊問題의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데 있으며, 비록 그 사용이 좀 복잡성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색인으로서 여러가지 長點을 가지고 있다.

정부간행물의 간행양식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문헌으로는 Unesco의 간행물로 발간된 A Study of Current Bibliographies of National Official Publications, edited by Jean Meyriat (Paris, 1958)이 있으며 정기간행물에 관한 것은 List of Serial Publications of Foreign Governments, 1803—1931, compiled by Winifred Gregory (Washington, 1932)를 들수 있는데 이러한 문헌이나 목록은 그 간행년도가 너무 오래 되었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는 현재 발간되고 있는 정기간행물 중에 19세기 초부터 아직까지 계속 발간되고 있는 간행물, 예컨대 British and Foreign State Papers와 같은 특수한 예외를 제하고는 오래전에 간행된 일이 있는 정부간행물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는 데 불과하다고 볼수 있다.

물론 New Serials Title에도 정부의 정기간행물을 부분적으로 열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 국가의 정기간행물을 빠짐없이 열거하고 있는 목록이라고 보기에는 여러가지로 難點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간행하고 있는 정부간행물의 목록은 문제가 되는 특정 국가가 주기적으로 그러한 목록을 간행하고 있느냐 여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년 국회도서관에 의하여 「정부간행물목록」이 발간되고 있어 정부간행물의 종류 및 간행양식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대학 및 시중은행의 간행물까지 이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정부간행물을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간되는 간행물로 파악하려는 基本立場에서 볼때 概念上的 혼란을 가지고 올 우려가 있다.

정부간행물에 관한 각국가의 목록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목록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별개의 목록을 간행하지 않고 정부간행물도 그 국가의 national bibliography나 기타의 trade bibliography 또는 catalog 등에 포함시키고 있는 국가도 있다. 예를 들면 (1) 오스트리아의 Australian Government Publications, (2) 프랑스의 Supplement F, "Publication Officielles," to the Bibliographie de la France, (3) 영국의 Monthly Catalogue entitled Government Publications, with a brief descriptive H.M.S.O. Monthly Selection 및 Annual Catalogue of Government Publications 등은 前者의 예이고, (1) 오스트리아의 Oesterreichische Bibliographie; Verzeichnis der Oesterreichischen Neuerscheinungen, (2) 벨기에의 Bibliographie de Belgique, (3) 이탈리아의 Bibliografia nazionale italiana 등은 후자의 예이다.

나) 국제정부기관의 간행물

국제정부기관에 의한 간행물 중에, 특히 UN간행물은 그 종류, 간행양식 및 내용에 있어서 복잡할뿐만 아니라 UN 기관 자체가 국제관계·기술원조·인원·사회문제·마약 등 다방면에 걸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깊이 간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행물의 양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방대해지고 있다.

그런데 UN 간행물이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UN전문기관의 간행물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그 이유는 UN과 그 전문기관의 업무분야가 상이하다는 점에서만 특별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행물의 分類方法에 있어서도 UN은 그 전문기관의 간행물에 있어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분류번호(UN documents series symbol)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兩者를 同一視할 수 없기 때문이다.

UN간행물은 UN의 각 主要機關에 의하여 간행되고 있는 것으로 UN헌장 제7조 1항은 이러한 주요기관으로서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및 사무국의 6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소재지가 New York에 있는 UN본부와 떨어져 있는 Hague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간행물의 양식도 기타의 주요기관들과 비교해 볼때 간단하므로 UN간행물의 범위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上記한 UN주요기관은 자기명의로 간행물을 발간하

고 있으며, 기타 UN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기관인 1952년에 총회가 설립한 군비축소위원회, 1964년에 총회가 설립한 UNCTAD 및 1965년에 경제사회이사회가 설립한 UNDP 등도 자기명의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UN간행물은 인쇄된 형태나 Readex microprint edition의 형태로 간행되며, UN기관의 各種회의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기 위하여 대부분의 UN공문서는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草案 또는 mimeograph의 형태로 준비되는 것이 보통이며, 주요기관의 업무를 補助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조기관, 자문기관 및 업무수행기관 등의 하급기관들도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방대한 양의 공문서를 産出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문서와 UN사무국에 의하여 특별히 행하여진 調査 및 研究로서 일반에게 공개할 가치가 있는 것은 사무국에 의하여 간행물의 형태로 再整理해서 발간하여 일반에게 배포하고 있다.

UN간행물은 大別하여 불매 documents, Sales publications 및 Official records등으로 구분되는데, documents는 이미 설명한 UN 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마련되는 모든 공문서를 말하며, Sales publications는 UN사무국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가치가 있다고 懸念되어 판매하고 있는 간행물을 말하며, Official records는 주요기관의 회의록 및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준비한 공문서 중에 UN의 정식회의록 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문서를 재정리하여 출간한 것과 각 하급기관의 보고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UN공문서를 제외하고는 UN간행물도 부분의 일반도서 및 정기간행물과 그 간행양식이 동일·유사하다는 것은 국가기관의 간행물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UN간행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목록으로는 UNDI (United Nations Documents Index)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Monthly Catalog와 比肩할 수 있는 중요한 색인으로서 New York에 있는 UN도서관의 Documents Section이 수집하는 모든 UN간행물을 每月 열거하며, UN document symbol에 의하여 분류한 Checklist이 Checklist에 열거되어 있는 UN간행물에 대한 author 및 subject index, mimeograph로된 UN공문서 가운데 official records 또는 기타의 간행물등에 再出刊된 공문서목록 및 UN간행물 중에 Sales publications로 다시 발간된 간행물의 목록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요한 UN간행물은 거의 다 열거하고 있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UNDI는 1950년 부터 계속 출간되고 있으며 1962년

까지는 UN전문기관의 간행물도 열거하고 있었지만, 1963년 부터는 각 전문기관이 간행하는 목록 및 색인으로 대체하고 UNDI는 순전히 UN간행물만 열거하고 있다. UN이 창설된 1946년 부터 1949년 까지의 기간에 간행된 UN간행물에 대한 것은 Check List of United Nations Documents에 열거되어 있다.

1973년 부터는 在來式방법에 의하여 색인을 작성해 온 UNDI를 Computer에 의한 색인인 UNDEX로 대체하였는데, UNDEX는 Subject (Series A), Country (Series B) 및 List of documents (Series C)등 3부로 구분되어 일년에 각각 10호씩 간행되고 있으며, 종래의 UNDI의 Checklist 부분에 해당하는 Series C는 UNDI를 약간 변형시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Series A 및 B는 UNDI의 Subject index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Computer에 의하여 직접 색인을 작성하고 있다.

Official records에 대해서는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 등 각각에 활용될 수 있는 별도의 Index to Proceedings 또는 United Nations Official Records 1948—1962 (New York, 1963)와 같이 official records를 회기별로 열거하고 있는 목록등이 있다. 그리고 UN사무국이 간행하는 Sales Publications에 관해서는 Catalogue of United Nations Publications가 주기적으로 간행되며 17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중요한 Sales publications를 대부분 열거하고 있다.

Sales publications의 목록이 분류하고 있는 17개의 주제는 : (1) 일반문제, (2) 경제 및 금융, (3) 보건, (4) 사회문제, (5) 국제법, (6) 신탁통치 및 非자치지역문제, (7) 정치 및 안전보장문제, (8) 운수 및 통신 (9) 원자력, (10) 국제협정, (11) 마약, (12) 교육, 과학 및 문화, (13) 인구문제, (14) 인권, (15) 피난민구조문제, (16) 국가재정문제, 및 (17) 국제통계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UN이 취급하고 있는 주제가 UN전문기관인 IMF, ITU, IAEA, WHO, Unesco 등의 활동 및 업무분야인 재정, 통신, 원자력, 보건, 교육, 과학 및 문화등과 상당히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상, 식량문제, 민간항공등의 특수문제에 관한 것은 WHO, FAO, ICAO등이 각각 전문적으로 취급하게 하고 있으므로 UN전문기관이 취급하는 활동 및 업무분야는 UN자체가 취급하는 것과 비교해 불매 좀더 상세할뿐만 아니라 광범위하므로, 이러한 특수문제에 관한 자료는 UN간행물 이외에 전문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N전문기관의 간행물에 대한 것은 각전문기관이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목록 및 색인에 의존해야 하며, 전

문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 중에 고도로 전문적이 아닌 일반간행물 및 정기간행물등은 National Union Catalog, New Serials Title, 국가기관의 '정부간행물목록' 또는 National bibliography 및 기타의 trade bibliography등에도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기관의 간행물 및 UN간행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한上記한 목록들에 부분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UN전문기관 자체가 발간하는 목록 및 색인 보다는 만족스러울수 없다는 것은 再論을 要하지 않는다.

OECD, EC 또는 OAS등 지역적인 국제기관에 의하여 발간되는 간행물에 대한 것은 UN전문기관의 간행물이다 UN간행물의 간행양식을 약간 가미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면 큰 착오는 없을 것이며, 이러한 자료를 취급하는데도 용이할 것이다.

Ⅲ. 수집·분류 및 정리방법

국가정부기관의 간행물은 외국의 국가도서관 또는 기타의 국가기관과 도서교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수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정부기관의 mailing list에 이름 및 주소를 올려서 무료로 간행물을 공급받을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정기간행물을 직접 취급하고 있는 書籍商을 통하여 구입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정기간행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UN간행물에 대해서는 기탁도서관을 제외하고는 UN간행물을 체계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Readex microprint edition을 구입하든지 UN사무국에 의하여 판매되는 Sales publication을 구입하는 도리 밖에 없을 것이다. UN전문기관의 간행물 및 지역적인 국제기관의 간행물에 대해서는 直接購入하거나 이러한 간행물을 취급하는 agent가 있으면 이를 통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그런데 정기간행물과 같이 多様な 성질을 갖는 자료를 어떻게 수집·분류 및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이론적 또는 실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일반도서와 통합해야 한다고 보는 통합주의, 일반도서와 독립시켜 特別取扱을 해야 한다는 분리주의, 그리고 兩者의 입장을 절충하고 있는 절충주의등 3개의 도서관정책을 가려낼 수 있다.

통합주의는 정기간행물이 일반도서 및 정기간행물과 外形上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價行本으로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은 일반도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정리하면 되고,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정기간행물은 일반정기간행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정리하거

나 가나다順으로 간행물의 명칭에 따라 분류 정리하면 된다고 하며, 정기간행물도 다른 일반도서와 마찬가지로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것이 관련 주제에 관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을 법학·경영학·과학기술등 특수전문분야의 도서관자료와 병합시킬수도 있으며, 미국학·중동지역·공산권연구등 지역연구도서관 자료와 병합시킬수도 있는 利點이 있다.

이에 반하여 분리주의는 정기간행물을 일반도서 및 정기간행물과 독립시켜서 별개의 자료로 수집·분류 및 정리를 하고 있는 도서관정책을 말하며, 정기간행물에 대한 분리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論據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를 들수 있다.

- 1) 정기간행물을 일반도서와 분리시키는 경우에는 이러한 간행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司書가 이 분야에 대하여 좀더 효과적인 참고업무를 행할수 있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사서들이 정기간행물에 관한 참고업무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간행물의 수집·분류 및 정리업무까지 동시에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기간행물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사서들보다 간행물의 내용 및 간행양식등에 관하여 좀더 숙달해 있다는 것.
- 2) 시간의 소요라는 관점에서 볼때, 그 자체 특이한 분류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을 일반도서와 분리시켜 취급하는 것은 간행물의 구입 즉시 그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으며, 간행물을 그 발간기관에 의하여 분류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내의 他部署에 보낼 필요없이 書庫에 직접 배열할 수 있다는 것.
- 3) 정기간행물에 관한 목록카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비가 적게 들수 있다는 것.

이상 언급한 논거를 살펴 볼때, 제3)의 이유는 별로 妥當性이 없는데 그 이유는 카드작성하지 않고 정기간행물을 순전히 인쇄된 목록이나 색인데만 의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최소한도 간행물의 내용을 識別할수 있는 정도의 카드작성은 不可避함으로 경비면에서 결코 적게 된다는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분리주의의 논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의 이유, 즉 정기간행물을 취급하는 사서가 간행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게되므로서 효과적으로 참고업무를 수행할수 있다는 점이며, 제2)의 이유도 간행물의 이용을 신속하게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리주의의 장점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분리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국가정부기관 및 국제정부기관의 간행물을 전부 분리시킬 것인가 또는 주요한 외국정부기관이나 UN간행물에 한하여 분리시키되, 과학기술분야의 간행물과 같이 고도로 기술적인 자료에 대한 것이나 정부가 발행하는 지도 또는 도표들은 그 내용의 특수성 및 간행양식의 특이성을 감안하여 일반도서와 분리시키되 별도의 취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절충주의는 통합주의 또는 분리주의가 정부간행물의 효과적인 이용을 확보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단점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양자의 장점을 절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데 있다. 그 이유는 통합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정부간행물도 LC, DDC 또는 UDC 등의 분류방법에 의하여 일반도서 및 정기간행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정부간행물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에 넣지 않게되어 체계적인 이용이 곤란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분리주의도 미국의 정부간행물 또는 UN 간행물의 경우에는 Superintendent of Documents 분류방법과 UN document series symbol 등을 각각 활용하여 국가정부기관 및 국제정부기관의 간행물을 간행기관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므로 간행물의 체계적인 이용을 통합주의의 경우보다는 용이하게 해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분리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모든 간행물을 일반도서 및 정기간행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서 특별 취급을 한다는 것은 정부간행물의 종류 및 간행양식의 차이점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에 대하여 적용될수 있는 분류방법이 아직도 고안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분리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미국의 정부간행물과 UN간행물의 경우와 같이 양자를 同一視하여 같은 방법으로 분류·정리할 수 없으며, 양자는 어디까지나 독립된 2개의 상이한 간행물群으로서 별도의 취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실정에 착안하여 절충주의는 종합대학과 같이 사회과학분야의 연구를 광범위하게 행하고 있는 기관의 도서관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영국의 정부간행물 또는 UN간행물과 같이 목록 및 색인이 잘 완비되어 있는 간행물은 분리시켜서 특별취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기타의 방대한 수의 간행물에 대해서는 일반도서 및 정기간행물과 같이 완전히 분리·정리할 필요없이 정부간행물 사서의 재량필에 간행물을 약식방법에 의하여 간단히 분류·정리하여 주제별로 일반도서 및 정기간행물에 통합시키고, 도서관의 목록카드를 이러한 간행물의 존재를 확인할수 있도록 配慮해 주므로써 충분하다고 한다. 이러한 간행물로는 UN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기관의 간행물 외국의 정부기관

및 지방정부기관의 간행물등으로서 목록 및 색인이 불충분한 간행물을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절충주의의 입장은 방대한 수량의 정부간행물을 일일이 일반도서와 마찬가지로 분류·정리하는 것은 불경제적이므로, 목록 및 색인이 완비되어 있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구태여 시간을 드려서 분류할 필요없이 독립시켜서 별도의 취급을 하고, 기타의 간행물도 간단히 목록을 작성해서 이용자가 언제나 필요한 경우에는 찾아볼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간행물과 같은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最上の 방법이라고 한다.

IV. 우리나라 도서관과 정부간행물

우리나라의 도서관도 근래에 와서는 각종 정부간행물을 상당히 많이 수집정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간행물은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도서관과의 도서교환계약 또는 일반도서와 마찬가지로 구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간행물을 그때 그때 사들이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고려대학교의 UN자료실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도서관중에 정부간행물에 대하여 엄격한 분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도서관은 거의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간행물을 비교적 다량으로 구입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에 있어서도 국회의사록 등의 특수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간행물을 일반도서 및 정기간행물과 동일취급을 하여 분류·정리하는 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에 있어서는 pomphelt 또는 loose-leaf의 형태로 발간되는 정부간행물의 취급에 있어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간행물을 일반도서와 같이 취급하는대는 제본문제도 있고 하여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도서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서울대학교의 도서관도 통합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부간행물을 일반도서와 분리시켜서 특별취급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별로 느끼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아마도 주제별로 정부간행물을 정확히 분류정리하면 연구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정부간행물에 대한 분리주의를 취하는 도서관의 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미국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정부간행물을 특수 자료로서 별도 취급을 해야할 필요성을 별로 실감하고 있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정부간행물의 양이 증가하고 그 내용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정부간행물에 대한 이용자의 問議가 날이 증가 일로에 있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리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도서관이 증가하게 되고 또

여러 연구도서관 및 대학도서관들이 이 문제를 놓고 여러 각도로 연구하게 되어 미국도서관협회내에 정부간행물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간행물취급에 관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앞으로 도서관에 의한 각종 연구자료의 수집이 고도로 발달하고 전문성을 띄게 됨에 따라, 정부간행물의 효과적인 수집·분류 및 정리문제를 다각적인 면에서 고찰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시기가 머지않아 곧 닥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이 정부간행물에 대하여 現段階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상당수의 간행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이 좀더 체계적으로 간행물을 수집·분류·정리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선 그 제1단계로서 한국도서관협회내에 정부간행물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공통문제를 논의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서관학의 교과과목중에 정부간행물의 소개를 가능하게 해주는 과정을 추가하고 정부간행물의 체계적인 수집분류 및 정리에는 상당한 금전이 요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방법을 협회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강구하며, 정부간행물에 대한 중요한 목록 및 색인의 조사 및 편찬에 관한 문제를 분과위원회의 主導下에 착수함으로써 미비한 정부간행물의 서지참고자료를 보충할수 있게하는 것등은 연구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로 커지고 있는 정부간행물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을 새롭게 하여 앞으로 해야 할 막중한 작업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Brenda Brimmer and others. A Guide to the Use of United Nations Documents(Including reference to the Specialized Agencies and Special U.N. Bodies). (Dobbs Ferry, N.Y.: Oceana Publications, Inc., 1962).
2. Anne Morris Boyd. United States Government Publications. 3d. ed. Rev. by Rae Elizabeth Rips. (New York: The H.W. Wilson Co., 1949).
3. James B. Childs, "Current Bibliographical Control of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Document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10 : 319-31 (Summer, 1966).
4. Norman F. Clarke, "Cataloging, Classification and Storage of Government Publications When Incorporated into the General Library Collection," Library Trends, 15 : 58-71 (July, 1966)
5. Doris Cruger Dale, "The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Systems for Government Publication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13 : 471-83 (Fall, 1969).
6. Ellen P. Jackson, "Cataloging, Classification and Storage in a Separate Documents Collection," Library Trends, 15 : 50-57(July, 1966).
7. Edward P. Leavitt, "Government Publications in the University Library," Library Journal, 86 : 1741-43 (May 1, 1961).
8. Edith Marie Sims, "Selection and Reference Use in the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y," Library Trends, 15 : 107-116 (July, 1966).
9. "United Nations Documents" (special issue), Illinois Libraries, Vol.55, No.3 (March, 1973).

「圖書館實務便覽」發刊

今般本會는 그간 切版되어 여러분들이 購得할 수 없었던 「圖書館實務便覽」을 다시 影印하여 發刊하였읍니다.

「圖書館實務便覽」은 組織管理, 分類, 目錄, 資料選擇, 施設 등 圖書館에 대한 基礎理論을 總網羅한 도서관 핸드북으로서 一線 司書는 勿論, 圖書館學을 쉽게 理解하려는 基本이 되는 圖書館運營書입니다.

A5版/864面 定價 6,500원(會員 5,200원)

연락처 : 韓國圖書館協會 事務局 (22) 4864 · 5613